

현대 천황제 사상*

정 창 석**

目 次

1. 머리말
 2. 현대천황제의 성립
 3. 가족주의 사상
 4. 신성성의 사상
 5. 상명하복의 사상
 6. 상징성의 사상
 7. 맺음말
-

1. 머리말

1989년 11월 평성천황(平成天皇)의 즉위로 일본은 또 다른 시대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일본인에게 있어 전쟁으로 일관한 소위 ‘소화(昭和)시대’를 마감하는 것은 원죄의식을 털어버리는 전환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국주의, 아시아 침략, 군국주의 파시즘, 원자폭탄의 투하, 무조건 항복, 미국의 군사점령 등 근대 천황제(天皇制)가 겪어 온 온갖 부정적 역사를 뒤로 하고 천황제¹⁾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 본 논문은 2004년 학술진흥재단 지원(KRF-2002-072-BM2059)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동덕여대자대학교 부교수 일본사

1) 천황제(天皇制)라는 용어는 일본공산당의 강령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1922년 창립된 일본공산당은 처음부터 ‘군주제(君主制)의 폐지’를 운동의 목표로 내세웠다. 1927년의 코민테른(COMINTERN) 테제에서도 ‘군주제의 폐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주의 입장에서 ‘천황제’의 성격을 사회과학적으로 자리매김하여 그것의 타도를 선명하게 제시한 것은 ‘32년테제’부터였다. 최초의 검토회에는 가타야마 센(片山潜), 노사카 산조(野坂

평성천황에 이르러 ‘민중과 가까이 있는 황실(皇室)’을 표방하면서도 왕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베일에 쌓인 듯 비밀 투성이의 존재로 남아 있고, 속류 저널리즘의 선동 속에서 나루히토(德仁) 왕세자의 결혼(1993)은 국민적 축제 분위기로 이루어졌으며, 왕세자비의 출산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것을 비롯, 여자 천황의 가능성이 공공연히 공론화되고 있다.

소위 ‘평화헌법’의 개정이 이제는 정치가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래 장기 경제침체로 인한 우경화의 경향이 현재의 일본을 제국주의시대로 되돌리고 있다는 주변국의 우려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대 일본이 언제나 그러했듯 일본적 내부분제는 항상 외부의 어느 대상을 향해서 폭발한다는 일본식 문제해결방식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과서 문제, 영토 문제, 정신대 문제,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참배문제 등은 일본의 이러한 역사적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본의 자세는 언제나 책임회피와 과거의 기정사실화를 노리고 있다.

일본인의 잠재의식에 뿌리를 내린 소위 ‘국체의식(国体意識)’은 이미 천황제 수용여부의 판단기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가 천황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인의 일어난 일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에서 나오는 현실주의와 섬나라의식의 국가적 이기주의에 연원하는 배타성이 결합하여 ‘국체의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아직도 세계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나라, 이웃이 받은 고통에 무관심한 나라, 그리고 역사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나라가 되어 주변국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

아시아와 결별한 지 120년(1885, 脱亜論), 일본은 과연 아시아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일본은 과연 아시아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의 해답이 천황제의 향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의 현대에 있어서 일본인의 의식 속에 잠재한 아시아의 일등국가, 아시아의 선진국이라는 설익은 우월감이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절대주의 천황제하의 ‘팔굉일우(八紘一宇)’ 사상과 ‘황도주의(皇道主義)’에 뿌리를 두고 있고, 아시아의 리더라는 황당무계한 사명감이 저 악명 높은 ‘대동아

参三), 야마모토 켄조(山本懸藏) 등 일본대표가 참가하였고 최종적으로는 핀란드의 쿠시넨(O. Kuusinen)의 보고를 기반으로 하여 코민테른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이것이 코민테른의 지령(指令)으로 하달되어 일본공산당에서는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 등이 번역하여 1932년 7월 기관지 『적기(赤旗)』에 ‘일본의 정세와 일본공산당의 임무에 관한 테제’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이 ‘32년테제’ 이래 ‘천황제’라는 번역어가 일본의 지식층 사이에 정착되어 갔다(井崎正敏 『天皇と日本人の課題』 洋泉社 2003. pp.50-51)

공영권(大東亜共榮圈) 사상의 연장이라는 역사의 교훈은 천황제와 관련시킬 때 아직도 그 시효(時效)를 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 천황제의 역사성에는 일본인 스스로에 의해 천황제에 대한 사상적 자리매김의 과정 없이 아시아가 일본을 수용할 수 없는 아시아적 필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천황제의 과제를 풀지 않는 한 이제는 아시아가 일본을 사절할 차례인 것이다.

역사의 무거운 원죄의 청산을 거부한 채,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와 일본 국민의 단죄의식 부재를 기회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일본의 천황제, 그 속에는 언제나 휴화산 같은 폭발력이 잠재해 있어 언제 무엇을 계기로 ‘팔괘일우(八紘一宇)’가 ‘Universal Brotherhood’로, ‘대동아공영권’이 ‘아시아공동체’로 되살아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천황제의 무책임성이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천황제의 향방을 주시하고 대처해야 할 숙명을 안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해당사자인 일본인이 아니라 피해당사자인 주변 국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또한 역사가 던져 주고 있는 교훈이다. 이것이 21세기에 또 다시 천황제를 연구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다.

2. 현대 천황제의 성립 - 근대 천황제와 상징천황제, 그 연속성의 순환

현대 천황제의 성립은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중앙집권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 1889년 제정)’에 의해 확립된 근대 천황제가 그 모체라 할 수 있다. 이 일본의 근대 헌법은 흥정헌법(欽定憲法)의 형식을 밟아 그 기초(起草)를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서양에는 사회질서의 기축(基軸)을 형성하는 기독교가 있으나, 일본에는 인심(人心)을 귀일(歸一)시키는 종교’가 없으므로 ‘오로지 황실(皇室)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²⁾는 기본 노선을 구축한 결과물이었다.

이 헌법은 제1조에 일본을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로 규정하여 소위 ‘국체(國體)’를 명확히 했고, 제2조에 황실전범(皇室典範)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황실을 국가기관화했다. 또한 제3조에 천황의 신성성(神聖性)을 규정하여 국가신도(國家神道)의 기틀을 닦는다. 제4조에는 천황

2) 『枢密院會議議事録』, 鈴木正幸『皇室制度』 岩波新書, 岩波書店 2005. p.76

을 통치권을 총괄(總攬)하는 국가원수로 규정, 천황주권(天皇主權)을 내세워 일본 국민을 ‘신민화(臣民化)’했다.

그 결과 천황은 ‘살아 있는 신(現人神)’으로서 입법·사법·행정·군사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초법적 존재로 군림하게 된다.

일본의 근대에 나타난 이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절대적 군주제를 규정한 헌법에 기반을 둔 근대천황제는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해 가면서 절대주의 천황제로서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일본제국주의를 패망의 길에 이르게 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의 패망과 더불어 일본의 천황제는 소위 상징천황제로 변모했다. 미국의 군사점령과 더불어 미·소냉전의 본격화와 사회주의 중국의 탄생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본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아시아의 방어선’으로 자리매김한 미국의 세계전략 및 극동정책과 맞물려 일본이 필사적으로 지키려 한 소위 ‘국체(國體)의 호지(護持)’가 이루어지고, 이 ‘국체’ 즉 천황제 유지의 예비단계로 1946년 1월 1일 연합군총사령부(GHQ)와 일본 정부의 합작에 의한 소화천황(昭和天皇)의 소위 ‘인간선언(原名, 新日本 建設에 관한 詔書)’이 있었다. 이것을 통해 천황은 신격(神格)을 강등당해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 소위 평화헌법에 의한 ‘국민통합의 상징(象徵)’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천황은 미국에 의해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에서 전범으로서의 기소가 면제되고, 이러한 면죄부의 부여는 일본인 자신의 손에 의한 천황의 전쟁책임 추궁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윽고 전국민적인 규모로 전쟁책임 망각증을 일반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의 천황에 대한 면죄부의 부여와 일본인의 천황에 대한 가치동일시현상은 오히려 일본인에게 저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을 확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이 천황제 유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은 1946년 1월 3일 총사령부에서 나온 소위 맥아더(D. MacArthur) 3원칙을 통해서였다. 일본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맥아더 3원칙은 천황제 존속, 전쟁의 포기, 봉건적 제도의 폐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의 천황제 즉 천황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며 왕위는 세습된다, 그러나 천황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행사하며,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³⁾.

3) 芦部信喜 『憲法』 岩波書店 1993. p.24

1월 13일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国憲法)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마츠모토위원회(松本憲法改正委員会)의 헌법초안이 거부되고 총사령부(GHQ)의 헌법초안이 제시되면서 상징천황제는 법제화의 길을 걸었다.

신헌법은 1946년 11월에 제정되고 1947년 5월에 시행되었다. 맥아더에 의해 제시된 3원칙은 소위 평화헌법(日本国憲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지는 일본 국민의 총의(總意)에 기반을 둔다(제1조)’고 규정하였고, ‘황위(皇位)는 세습하는 것으로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에 의하여 계승된다(2조)’, 또한 ‘천황의 국사(国事)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제3조)’로 되어 있고, 천황의 소위 ‘국사행위(国事行為)’는 헌법 제7조에 10개 항목을 규정해 놓고 있다.⁴⁾ 전쟁의 포기는 헌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고, 모든 봉건제도의 폐지는 일본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견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전후 일본의 천황제는 미국에 의하여 유지되었고, 미국이 제시한 소위 평화헌법에 의해 보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국민은 천황제 곧 ‘국체(国体)의 호지(護持)’는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천황제에 대한 일본인 스스로에 의한 자각적 선택이 말살된 채 ‘입법자’로서의 미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어진 민주주의에 의해 전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대일본제국헌법과 일본국헌법은 그 내용면에서 주권의 변경이라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마츠모토위원회(松本委員會)의 헌법 초안이 총사령부(GHQ)에 의해 거부되고 맥아더 초안을 강압에 의해 받아들이면서도 일본 정부는 ‘국체(国体)의 호지(護持)’라는 최후의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두 헌법 사이의 연속성을 용의주도하게 짜 맞추었다. 일본국헌법은 그 모두(冒頭)인 제1장을 대일본제국헌법과 마찬가지로 천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조에 천황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政体)를 규정하는 헌법 제1조는 주권자인 국민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국헌법은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는 대일본제국헌법 제1조

4) 제7조(천황의 국사행위) :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해 다음의 국사(国事)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政令) 및 조약을 공포. 2. 국회의 소집. 3. 중의원(衆議院)의 해산.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시(公示). 5. 국무대신(國務大臣)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관리의 임면(任免)과 전권위임장(全權委任狀) 및 대사(大使)와 공사(公使)의 신임장 인증(認證). 6. 대사면(大赦免), 특별사면, 감형, 형집행의 면제 및 복권(復權)의 인증. 7. 영전(榮典)의 수여.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외교문서 인증. 9. 외국의 대사(大使) 및 공사(公使)의 접수(接受). 10. 의식(儀式)을 행하는 일.

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천황을 주어로 하여 전면에 내세우고, 주권자인 국민을 뒤로 밀어내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의식적으로 숨기고 있다. 또한 대일본제국헌법의 규정에 의해 천황 스스로가 정하는 가법(家法)인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일본국헌법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개정되어 존속됨으로써 소위 ‘황실’은 국가기관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천황을 규정한 조항은 대일본제국헌법이 17개조인데 비해 일본국헌법은 8개조로 줄었을 뿐이다. 이것은 전후의 일본 정부가 미국에 의해 주어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일본제국주의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속성의 간계(奸計)는 이미 1946년 1월 1일 신격(神格)을 강등당한 소화천황(昭和天皇) 히로히토(裕仁)의 ‘신일본(新日本) 건설에 관한 조서(詔書)’, 소위 ‘인간선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인간선언’은 그 모두(冒頭)에 1868년 명치천황(明治天皇)이 내세운 ‘오개조(五個條)의 서문(誓文)’⁵⁾을 인용하여 ‘명치천황의 예지(叡智)’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의 원점은 ‘명치천황의 예지’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⁶⁾ 그 황위(皇位)는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 이하 ‘황조황종(皇祖皇宗)’⁷⁾으로부터 계승되었다는 것을 명치천황과 자신을 결부시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소위 ‘인간선언’의 어디에도 천황의 신격(神格)을 명확히 부정한 부분은 없다.

5) 1868년 3월 14일 명치천황(明治天皇)이 교토(京都)에서 문무백관(文武百官)을 이끌고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서약(誓約)한다는 형식으로 발표한 유신정권(維新政權)의 기본방침. 5개조(五個條)로 되어 있다.

1. 널리 회의(會議)를 일으켜 만기(萬機)를 공론(公論)으로 결정한다.

1. 상하(上下) 마음을 하나로 합쳐 활발히 경륜(經綸)을 행한다.

1. 관무일도(官武一途)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 그 뜻을 이루어 인심(人心)에 게으름이 없도록 한다.

1. 구래(旧來)의 누습(陋習)을 타파하고 천지(天地)의 공도(公道)에 기반을 둔다.

1. 지식(知識)을 세계(世界)로부터 구해 황기(皇基)를 크게 떨친다.

6) 1977년 8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소화천황은 소위 ‘인간선언’에 ‘오개조의 서문’을 인용한 것은 자신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인간선언’의 목적은 ‘오개조의 서문’ 부분에 있었고, 신격의 부정은 그 다음 문제였으며, 민주주의란 결코 수입(輸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高橋紘 編 『昭和天皇発言録』 小学館 1989. pp. 240-241)

7) 일본에 있어서의 ‘조종(祖宗)’의 의미는 단순한 조상의 의미가 아니라, ‘조’는 일본의 건국신화에서 천황의 조상신이라는 天照大神 이하 제신(諸神)을 의미하고, ‘宗’은 제1대 천황이라는 神武 이하 역대 천황을 의미한다.

“짐과 너희 국민 사이의 유대는 시종 상호신뢰에 의해 맺어져 단지 신화와 전설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천황을 살아 있는 신(現御神)이라 하고 또한 일본 국민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라 하여 드디어는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지닌다는 가공(架空)의 관념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⁸⁾

형식상 천황이 ‘신민(臣民)’에게 내리는 ‘조서(詔書)’의 절차를 밟은 위에, 명목상으로 건국신화와 전설의 부정을 암시하여 ‘살아 있는 신(現人神)’이라는 신격(神格)과 일본민족의 우월성을 청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신화와 전설보다도 더욱 강인한 천황과 일본인 사이의 현실적인 ‘상호신뢰’로 대치하여 확인함으로써, 천황은 변함없이 신성한 존재로서 일본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군신관계(君臣關係)의 의지를 용의주도하고도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에게 있어서 전후의 민주주의도 미국으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명치(明治)시대의 연속이라는 뜻이며, 천황제 역시 역사상의 당연한 절차로 계승되어 정당한 것이고 자신도 역시 정통(正統)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외면적 신격을 국제적 역학관계에 밀려 정치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부정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천황제 자체의 연속성을 주장하여 천황의 혈통성에 감추어져 있는 일본적 신성성(神聖性)을 국민과의 유대와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전쟁책임에 대한 일체의 의식이 결여된 채 오로지 ‘국체’의 유지에만 매달려 있는 전후 일본의 자화상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패전 후 유행했던 말 중에 ‘일억총참회(一億総懺悔)’가 있다. 패전 처리를 위해 성립된 히가시구니내각(東久迩内閣)의 히가시구니 나루히코(東久迩稔彦) 수상은 ‘국체(国体)의 유지야말로 우리의 신앙’이며, 이를 위해 ‘군·관·민 모두의 일억총참회’를 역설했다.⁹⁾ 이말의 진정한 뜻은 ‘나라를 지키지 못한 잘못에 대한 천황에의 국민적 사죄’를 의미하고 있었다. 침략전쟁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 천황에 대한 ‘신민(臣民)의 참회’인 것이다.¹⁰⁾ 이에 따라 매스컴에서는 천황의 ‘성단(聖斷)’에 의한 종결이었으므

8) 『朝日新聞』 1946. 1. 1

9) 히가시구니 나루히코(東久迩稔彦) 수상은 1945년 8월 28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군·관·민 일억총참회(一億総懺悔)’를 주장했고, 8월 30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사설에서 ‘일억총참회론’을 펼쳤다.

10) 이것에 대해서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일억(一億)이 총참회하는 내용은 7천만 일본인과 3천만 조선인인 셈입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조선인, 한국인에게 8. 15는 그들의 광복,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여

로 ‘패전(敗戰)’이 아니라 ‘종전(終戰)’으로, ‘점령군(占領軍)’이 아니라 ‘진주군(進駐軍)’으로 표현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인의 천황에 대한 ‘무한책임성(無限責任性)’을 세계에 대한 무책임성(無責任性)으로 치환하는 전국민적 전향의식(轉向儀式)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번 실패한 내셔널리즘의 단절로서가 아니라, 역사의 망각을 통해 과거를 정당화하려는 일본인의 전후인식에 내재화된다. 일본이 표방하는 외면적인 민주주의의 내면에는 항상 과거의 내셔널리즘을 회복하려는 잠재의식이 공존하고 있는 이중성의 원형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일본은 전후민주주의를 화려하게 선전하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미국의 군사점령을 마감하게 되고 자유진영에 편입되어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천황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The King reigns but does not govern.)’ 영국식 입헌군주¹¹⁾와 흡사한 ‘상징(象徵)’으로서, 소위 ‘평화헌법’이 규정한 ‘국사행위’에 한해 공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가족주의 사상 - 추종성의 집단주의

대일본제국헌법 제1조에 규정한 일본의 ‘국체(国体)’는 ‘만세일계(万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천황의 소위 ‘만세일계관(万世一系觀)’은 고사기(古事記, 712)와 일

기서부터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그러나 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새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즉 자기들의 침략전쟁에 조선인을 끌어들였다는 역사가 일본인의 전후의 반성에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加藤典洋 『敗戰後論』 講談社 1997 : 서은혜 옮김 『사죄와 망언 사이에서』 창비사 1998. p.280)

11) 영국의 입헌군주의 성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한 것은 웨스트민스터헌장이다.

웨스트민스터헌장(Statute of Westminster) : 1931년 영국 본국과 자치령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 자치령은 제1차 세계대전 중 군사협력을 통해 본국에 대한 지위를 향상시켰으므로 양자의 관계는 식민지적 종속관계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결합되는 연합체제로 발전시켰다. 1926년 “본국과 자치령은 각기 그 지위가 평등한 자치사회이며, 왕관에 대한 공동의 충성에 의해 자유로이 연합되어 있다”고 정의한 벨푸어(A. J. Balpaur) 보고를 채택하고 1930년에는 자치령 총독을 상징적 존재로 결의하였다. 웨스트민스터 헌장은 이들 결정을 이듬해 영국의회가 입법화한 것으로 영국연방의 근본을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국왕(Crown)이 ‘구성국의 자유로운 결합의 상징’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치령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연방, 아일랜드, 뉴펀들랜드 등이 본국의회에 대해 완전한 자주적 입법 기능을 획득했다. (『世界大百科事典』 23 学園出版社 1994. p.6)

본서기(日本書紀, 720)에 기반을 둔 혈연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천황제의 기본원리는 천황을 일본 최고(最古)의 가계(家系)를 이어온 도덕적 체현자(體現者)로 가치화한 것이다. 천황은 일본의 가족을 대표하는 존재이며, 이것을 확대하여 씨족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며 나아가 세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생산되는 것이다. 천황은 일본인의 가족적 결합의 중심이며 씨족적 결합을 매개하고 국민적 결합을 이끌어 내어 단일민족관을 창출해 내는 연원(淵源)인 것이다.

천황 가계의 신화적 정당화는 천황의 일본 지배를 정통(正統)으로 보는 일본적 사고방식을 토착화시켰다. 일본은 국토와 인민을 낳은 신(天照大神)의 자손(第1代 天皇 神武)이 세운 나라이고, 이 신(神)과 그 자손(이것을 祖宗이라 한다)이 곧 천황의 조상이라는 신화와 역사의 착종화(錯綜化)가 소위 ‘만세일계론(萬世一系論)’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본이라는 국토와 거기에 살고 있는 인민을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인 국토와 인민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으로 연결되어 일본의 토지, 인민을 낳은 신의 자손인 천황이 일본을 지배하는 것은 정통(正統)이라는 천황정통론(天皇正統論)으로 이어진다. 천황 지배의 정통화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혈연관계로 맺어진 혈연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가족주의 국가관은 1930년대 일본의 국가사상으로 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1935년 미노베 다즈키치(美農部達吉)의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을 배격하는 과정에서 소위 ‘국체명징운동(國體明徵運動)’이 성행하여 이후 ‘국체의 명징’은 국민 도덕의 기준으로서 맹위를 떨치게 된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문부성(文部省) 발행의 『국체(國體)의 본의(本義)』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天皇)이 황조(皇祖)의 신칙(神勅)을 받들어 영원히 이를 통치한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만고불역(萬古不易)의 국체(國體)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대의에 기반을 두고 일대가족국가(一大家族國家)로서 억조일심(億兆一心) 성지(聖旨)를 받들어 능히 충효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체는 우리 나라 영원불변의大本(大本)이며, 우리 나라의 역사(國史)를 관통하여 광채를 발하고 있는 것이다”¹²⁾

12) 『國體の本義』 文部省 1937. p.9

여기에는 주권자로서의 천황과 국체의 신수설(神授說), 그리고 천황제의 가족주의관 등이 규정되어 있고 동시에 천황제의 절대성과 역사성이 표명되어 있다. 이것은 학사원(學士院) 편찬의 『제실제도사(皇室制度史)』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 개벽 이래 군신(君臣)의 도리가 엄격하게 정해져 황위(皇位) 계승은 황통(皇統)을 통해 이어지며 신하된 몸으로 군(君)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군(君)은 민(民)을 공민(公民)으로서 자비로 대하고 민은 군을 살아 있는 신(現人神)으로 받드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황실과 신민과는 근원을 같이 하는 분파(分派)이며, 신민은 황실을 국가의 종가(宗家)로 우러러 보고 군민(君民)으로 하여금 부자(父子)의 친목을 겸해 충효 일여(忠孝一如), 상하상친(上下相親), 군은 민을 자애함을 덕으로 하고 민은 일심으로 군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신념과 국민적 정조(情操)는 오로지 우리 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국체가 만방무비(萬邦無比)한 원인이며 국체의 본의(本義) 또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¹³⁾

여기에 이르러서는 가족주의 천황제에 있어서의 ‘군(君)’의 일방적인 시혜 의식과 ‘신민(臣民)’의 무제한적 충성, 충효관념의 혼합 등의 전근대성과 가치 기준의 근원인 소위 ‘국체’의 무한포용성에 의한 국민적 통합이라는 초근대성의 공존이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국체의 만방무비한 원인’을 근거로 삼아 일본민족의 선민의식과 우월감이 노골화되고 증폭되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천황을 둘러싼 ‘언령(言靈)과 페티쉬즘(fetishism)이 만연해 감에 따라 ‘신민’의 무한책임성과 맹목성도 멈출 줄 모르고 커져 갔던 것이다.

이 절대주의 천황제의 가족주의관이 일본과 일본인을 뛰어 넘어 세계 인식으로까지 확대되어 나간 것이 국권론(國權論)인 것이고, 이것을 외연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적 국가주의가 나타난다. 이 확대의 궁극적인 형태가 저 악명 높은 ‘팔굉일우(八紘一宇)’인 것이다. 건국신화상의 소위 ‘신무(神武) 동정(東征)의 성지(聖旨)’라는 ‘팔굉위우(八紘為宇)’를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확대 재생산하여 천황제 가족주의로 포장한 것이 소위 ‘팔굉일우(八紘一宇)’ 사상이다.

“원래 팔굉일우(八紘一宇)의 ‘팔굉’이란 전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우란 일

13) 大日本帝國學士院編纂 『皇室制度史』 第一卷 大日本帝國學士院 1937. 126p.

가족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가 목표로 하는 것은 대동아 내지는 전세계를 묶어서 하나의 커다란 가족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건설하고 있는 신질서는 세계 전인류를 우리의 가족으로 포용하여 우리의 자식과 형제로 삼아 각각 행복하게 살게 하자는 것이다. 팔굉일우의 황도정신(皇道精神)은 우리 나라 건국 이래의 국체정신이며 말할 것도 없이 직접적으로는 신무천황(神武天皇)의 조칙(詔勅)에 그 근거를 둔 이 정신은 소위 삼대신칙(三大神勅)보다 오랜 이자나기노미코토(伊弉諾尊)와 이자나미노미코토(伊弉冉尊)(日本『古事記』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夫婦神으로 일본의 국토창조신이라 함. 天照大神 이하 많은 神을 낳았다 함 一人용자)의 나라를 낳은 신화에 의거하여 국체정신을 살펴 보건대, 일본의 고대신화에서는 팔대주(八大洲)의 국토도 인민도 전부 황실의 선조이신 이자나기노미코토와 이자나미노미코토가 낳았다고 되어 있다. 즉 황실과 국민, 황실과 국토, 국민과 국토의 관계는 부자 형제의 가족관계이며, 원래부터 일체였다고 보여지므로 단지 인간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과 산천초목까지도 우리의 가족이고 일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⁴⁾

이러한 ‘팔굉일우’의 실천적 방법론이 침략주의로서의 소위 ‘성전(聖戰)’ 논리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성전은 단지 명치유신(明治維新) 이래의 것이 아니라 멀리 건국 이래의 전통에 입각한 것이다. 제1대의 천황을 신무(神武)로 하여 열성의 덕을 ‘성문신무(聖文神武)의 덕(德)’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결코 이유없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천황은 ‘육합(六合)을 합쳐서 도움을 열고 팔굉을 덮어 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八紘爲宇)’는 칙서를 내려 천업회홍(天業恢弘)을 지향했던 것이다. 이리 하여 떠도는 나라들을 수리고성(修理固城)하여 팔굉을 우로 한다는 것은 결코 단지 제국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세계 국가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의미 하며 건국 이래 현재에 이르는 질실한 비원을 아는 것이다 …………… 또한 삼국동맹(1940년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군사동맹-인용자)의 칙서에는 ‘대의를 팔굉에 선양하여 곤여(坤与)를 일우(一字)로 하는 것은 진실로 황조황종(皇祖皇宗)의 대훈(大訓)으로 짐이 밤낮으로 생각하여 잊은 적이 없나니 …………… 생각해 보면 만방으로 하여금 각각 그 자리를 찾게 하여 모든 백성을 안도케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업으로 전도가 아직 요원하니 그대들 신민은 더욱 국체의 관념을 명징(明徵)하고 심모원려(深謀遠慮)로 협심협력, 비

14) 石本清四郎 ‘道義朝鮮’ 『朝光』(朝鮮) 1942. 9月号. pp.27-29p. 이시모토 세이시로는 당시 조선총독부 정보과 조사관이었다.

상시국을 극복하여 천양무궁(天壤無窮)의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하라'고 하명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변혁의 파도가 드디어 높아지려 할 때 세계유신에의 대선언이며 세계 황정복고(皇政復古)의 대호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진실로 하늘에 두 해가 없고 땅에 두 왕이 있을 수 없나니, 우주 만물이 유일절대의 태양을 중심으로 질서를 구성하는 것과 같이 세계 인류는 태양의 아들인 천황에 귀일순종(歸一順從)함으로써 처음으로 질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우주의 절대권위에 바탕을 둔 세계질서야말로 천업회홍(天業恢弘)이며 세계평화 역시 거기에서 약속되는 것이다”¹⁵⁾

이렇게 하여 세로축으로서의 시간성이 고대로부터 근대까지를 꿰뚫고 가로축으로서의 공간성이 ‘천양무궁(天壤無窮)의 황운(皇運)’을 등에 업고 ‘팔괘위우(八紘為宇)’의 실천적 구체화인 ‘팔괘일우(八紘一字)’를 이루기 위해, ‘하늘에 두 해가 없고 땅에 두 왕이 없으므로’, 전세계를 ‘천황에 귀일 순종’시키는 일본제국주의의 소위 ‘성전(聖戰)’으로서의 무한전쟁(無限戰爭)은 전개되었던 것이다.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족주의 국가관은 그 확대 과정에서 일본인의 민족적 우월감과 선민의식이 세계에 대한 시혜의식으로 발전하여 일본인이 행하는 모든 침략전쟁을 ‘성전(聖戰)’으로 합리화했고 집단주의에 빠진 일본인은 전쟁광(戰爭狂)의 인형처럼 조종되어 저 피투성이의 소위 ‘성전’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또한 천황에의 민족적 동일시현상은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의 주체성을 마비시켜 일본민족으로 하여금 수직적 정점으로서의 천황에의 일원적 가치의 존을 필연화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천황의 이름으로 행하면서도 모든 것을 천황의 이름으로 부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미순환(首尾循環)의 모순 일변도의 비논리는 가치의 근원체가 천황이면 책임의 근원체도 천황이라고 하는 ‘천황귀일(天皇歸一)’이 내포하는 인과적 필연성에 대한 인식의 결락(欠落)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일단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천황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것은 물론, 개인 혹은 집단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일본인 특유의 무책임성과 기정사실화의 전쟁인식을 낳는 것이다. 천황을 정점으로 하여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일방적 억압구조는 상향적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내부에서의 파열을 피하기 위하여 외부적 돌파구를 필연적으로 찾는 현실 해결 방식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일단 그 배출구가 외부로

15) 日本世紀社同人 ‘聖戰の本義’ 『文芸春秋』 1942. 1月号. p.96-97

향해지면 가치의 근원체인 천황의 이름으로 가치화하여 모든 상대성을 거부하고 내부적 합리화를 거둬들이기 때문에 일본민족만의 일원적 정당성을 맹신하는 환상 속에서 단일민족관에 연원을 둔 야마토민족(大和民族)의 우수성과 우월감을 표출했던 것이다. 또한 이 환상 속에는 일원적 가치기준만이 존재하여 자체 정화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모든 것을 악(惡)으로 규정, 모든 악을 외부 및 타자에게 전가해 버리는 폐쇄회로 내에서의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황에게 책임을 묻는 가치관이 생성될 리가 없는 일본인의 전쟁책임과 전후책임 부재는 이러한 현실 인식과 세계 인식의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전후 일본국헌법 아래 상징천황제로 변모하면서도 일본인의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족주의 국가관은 그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본적 현실이다.

오히려 전후의 일본 사회에서 천황이 일본 국민의 전면에 나서 행하는 활동은 더욱 확대되고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외면상으로는 신격(神格)으로부터 인격(人格)으로 강등당한 천황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또한 민중에 가까이 다가가는 천황상을 정립하는 방안으로 지방 순행(巡幸)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각종 행사에 모습을 나타내 천황은 항상 민중과 같이 있다는 이미지 조작을 하게 되며, 이러한 제스처는 민중 사이에 천황에 대한 친밀감과 황실(皇室)에 대한 가부장적 환상을 심어주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왕실의 가족적 행사가 국민적 행사 내지는 국민적 축제로 변질되는 일본인의 몰자각적 천황숭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1959년의 아키히토(明仁) 왕세자와 쇼다 미치코(正田美智子)의 결혼은 국민적 축제가 되어 전후 복구의 완전 종결을 의미하고 있으며, 1989년 1월 쇼와(昭和) 천황의 죽음은 전후 총결산이라는 시대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1989년 11월의 평성천황(平成天皇)의 즉위는 일본인 스스로에게는 근대의 전쟁의 악몽으로부터 해방되어 국제화·정보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화려한 출발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이면에서 일본인은 어느덧 소위 상징천황제를 일상화하고 내면화하여 천황제의 연속성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의식화하게 된다. 크고 작은 일상생활의 이상적 형태의 정점에 천황과 천황가를 상징하여 천황을 이상화(理想化)하고 동일시하였던 것이다.

“소화천황의 죽음이 임박하여 기장(記帳, 1988년 9월 22일부터 소화천황의 완패를 기원하는 일본인을 위해 천황궁 앞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설치한 기장소(記帳所)를 찾아가 이름을 적는 것 - 인용자)을 위해 찾아온 젊은이에게 소화천황은 어떤 이미지인가 물으면, ‘일본의 아버지’라는 대답이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로 되돌아 온다. 천황은 일본의 가부장(家父長)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정답다’, ‘호뭏하다’, ‘노고를 위로하고 싶다’는 등의 고정된 수식어가 붙은 천황 가정의 초상은 ‘일역 총중류(總中流)’ 의식에 젖어 있는 일본인 가정의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천황의 ‘성가족(聖家族)’이 사회적인 위계질서의 최정점에 서 있는 것이다. 천황가(天皇家)의 매너, 옷차림과 풍속이 자주 여성잡지 등에 오르기도 한다. 천황가와 결혼하는 여자는 ‘구극(究極)의 영양(令嬢)’이고, 그 다음이 ‘진짜 영양층(令嬢層)’, 그 아래가 노력하면 영양이 될 수 있는 층, 또 그 밑에 사이버 영양이라는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다¹⁶⁾

일본인의 이러한 천황에 대한 가치의존과 이상화에는 천황과의 동시대의식이 원호(元号)라는 시간성의 지배 속에 복종하는 맹목성을 보인다.

“전쟁체험세대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중 특징적인 것은 천황과 더불어 인생을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기장소(記帳所)에 온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활사의 경험 곧 전쟁 중과 전후 체험의 요소요소에 천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화천황에 대하여는 ‘가부장적(家父長的)인 위대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다.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것은 한편으로 관념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라는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거기에 자신의 아버지를 중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위대한’이라는 말 속에는 ‘성스러운 사람’ 혹은 ‘살아 있는 신(現人神)’라는 측면이 있어 종교적인 권위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후의 천황에 대해서는 ‘성실한 사람’, ‘순수한 사람’, ‘무구(無垢)한 사람’, ‘사심(私心)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다. ‘같이 있으면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식으로 정서적인 일체감을 느끼며, ‘동경(憧憬)의 대상’이므로 ‘사모의 정을 아뢰웁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¹⁷⁾

전후 일본의 가족주의 국가관은 일본인 특유의 추종적 집단주의를 만연시

16) 栗原彬 ‘日本民族宗教とそとの天皇制 『昭和の終焉』 岩波新書 岩波書店 1990. pp.179

17) 栗原彬 ‘現代天皇制論 『天皇と王權を考ふる』 岩波講座 第一巻. 岩波書店 2002. p.133

켜 일상성의 정당화를 거듭하면서 ‘가족을 위하여’로 시작하여 ‘회사를 위하여’와 ‘나라를 위하여’로 이어지고, ‘직장을 가정처럼’, ‘우리 모두 다 함께’라는 스토리 아래 기업에 대한 운명공동체관(運命共同体觀)을 낳았다. 그리고 이 운명공동체관은 단일민족관에 의한 국가관으로 이어져 ‘일본주식회사’라는 야유를 받으면서도 경제주의를 배경으로 한번 실패한 내셔널리즘의 회복을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그 현실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항상 ‘국가의 가부장’인 천황이 자리잡고 있다.

4. 신성성의 사상 - 이상숭배와 페티시즘

일본의 근대 초기 명치유신(明治維新) 직후의 천황은 일본 민중과는 무관(無関)한 대상이었다. 따라서 민중에게는 천황의 존재에 대한 어떠한 관념도 없었던 것이다. 1868년 1월 왕정복고(王政復古) 선언 이후 명치정부로서는 혼란된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국가 형성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천황의 위상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또한 이른바 유신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이에 유신정부는 민중의 의식개조를 위해 국가의 중심적 존재로서의 천황상(天皇像)을 선전하는 ‘인민고유(人民告諭)’를 빈번하게 반포(頒布)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천자(天子)님은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일본의 주인이시고’, ‘진실로 신(神)보다도 높으시며, 한치의 땅, 한 사람의 백성도 모두 천자님의 것(奥羽人民告諭)¹⁸⁾임을 강조하여 막부(幕府) 지배 체제에 젖어 있는 민중을 천황제 국가로 편입시키기 위한 신성 조작을 자행했던 것이다.

또한 천황의 현실적 존재를 알리기 위해 전국적인 순행을 거듭했다. 명치 천황은 1876년부터 81년까지 대규모 지방순행을 행한다. 이러한 천황의 움직임을 당시의 신문이 기사를 수행시켜 대대적으로 보도했음은 물론이다.

“논밭과 산림 사이를 지나갈 때에는 나와서 배알하는 사람도 군데군데 있었지만, 전부 고쟁이를 입은 여자아이를 비롯해 쟁기를 굵어진 농부들이 흙 묻은

18) 鈴木正幸 皇室制度 岩波新書 岩波書店 2005. pp.19-20

발로 눈두렁에 늘어서거나 풀밭에 서 있거나 들맹이에 걸터앉은 채였고, 벌거벗은 아이를 업은 채 옆구리로 아이의 머리를 끌어내 젖을 물리는 아낙네도 있었다. 혹은 낮잠 자고 있는 사람을 두드려 깨워, ‘여봐라 나랏님이시다, 절을 올리지 못할까’ 하고 호통치는 바람에 졸린 눈을 비비며 천황의 가마에 절을 하는 웃지 못할 풍경도 비일비재했다”¹⁹⁾

이윽고 명치정부는 1889년에 제정한 대일본제국헌법 제3조에 ‘천황은 신성(神聖)하여 침범할 수 없다’로 규정, 천황의 ‘살아 있는 신(現人神)’으로서의 신격(神格)을 명확히 했다. 이것에 의해 근대 일본의 국가신도(國家神道)가 확립되어 천황숭배로 확산되었다. 1906년 명치정부는 ‘신사합사령(神社合祀令)’을 내려 전국의 신사를 일촌일사(一村一社) 원칙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모든 신사를 국가신도의 최고신으로 설정한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를 모시는 이세신궁(伊勢神宮)의 산하로 통합해 버렸다. 천황의 조상신을 모신다는 이세신궁을 정점으로 하고 전국의 모든 신사를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 상에 나타나는 천황의 조상신과 연결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 민중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조상신 등 민속적(民俗的)인 신들이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의 하위신(下位神)으로 재편됨에 따라, 최고신의 자손인 천황은 당연히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신성 조작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성천황(神聖天皇)’과 ‘신민(臣民)’이라는 이항관계(二項關係)는 근대 일본의 절대주의 천황제의 기본이었던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소위 ‘어진영(御眞影)’이라는 천황의 사진을 봉정전(奉呈殿) 앞에서 예배하며 천황에의 충성과 효도를 맹서하는 ‘교육칙어(教育勅語, 1890년 제정)’를 봉독(奉讀)하고, 절대주의 천황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군인칙유(軍人勅諭, 1882년 제정)’를 암송하며 천황이 사는 궁성(皇居)을 향해 요배(遙拜)하는 것이 일상생활화되었던 것이다.

또한 천황에 대한 신성 조작은 천황의 직접 통수를 받는(대일본제국헌법 제11조) 일본제국주의 군부에서 소위 ‘황군(皇軍)’ 의식으로 특이하게 나타나 ‘군인칙유’의 맹목적 실천으로 그치지 않고, ‘군신(軍神)’이라는 선민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어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를 창출해 낸다. 소위 ‘야스쿠니신사’는 1869년 유신전쟁(戊辰戰爭)에서 전사한 이른바 관군(官軍)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건립 당시 ‘도쿄초혼사(東京招魂社)’라 부르던 것이 1877년 명치천황의 명명(命名)에 의해 ‘야스쿠니신사’로 개칭되었

19) 岸田吟香 『東京日日新聞』, 1876. 7. 5

다. 이후 절대주의 천황제 국가를 위해 죽은 일본인을 ‘신(神)’으로 모시고 추모하는 국가적 신사로 확대되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주의를 상징하는 신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신사의 제일(祭日)에는 ‘살아 있는 신’인 천황이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제(祭)를 올림으로써 모셔진 영령(英靈)들이 신으로 승천(昇天)하여 ‘신국(神國)’의 ‘군신(軍神)’이 된다는, 천황의 신성성에 대한 동일시현상과 가치의존을 대표하는 신사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천황에 대한 신성성의 사상은 1935년 소위 ‘국체의 명징운동’에 의해 국민사상으로 발전하여 모든 사상 탄압의 기준이 된다.

“천황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성스러운 뜻에 따라 우리 나라를 통치하시는 살아 있는 신(現御神)이옵시다 황조황종이 그 신의 자손이신 천황에게 나타나시어, 천황은 황조황종과 한몸이 되시어 영구히 신민과 국토 발전의 본원(本源)이시고, 한 없이 위대한 나랏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²⁰⁾

당연한 결과로 천황의 신성화는 그 통치를 받는 일본에 대한 ‘신국(神國)’ 사상을 낳아 ‘신주 불멸(神洲不滅)’을 외쳤고, 천황이 통수(統帥)하는 군대, 소위 ‘황군(皇軍)’이 행하는 모든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합리화하여 전쟁 습관화에 빠져 들어갔던 것이다.

“지나사변만이 성전이라 한다면 일청(日淸), 일로(日露), 만주사변 등은 전부 성전이 아니요 제국주의 전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영토를 손에 넣고 배상금을 요구한 일청, 일로의 전쟁은 과연 제국주의 전쟁이었던가. 한결같이 폐하의 명령을 받들어 싸우는 황군(皇軍)의 전쟁에 이러한 구별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선각들은 이러한 비성전(非聖戰)의 전쟁을 위해 수십만의 피를 흘렸던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 일찍이 황군이 싸운 전쟁 중 성전 아닌 제국주의 전쟁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영토의 할양, 배상금의 유무 같은 것은 단지 형식상의 지엽적인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떠한 대의(大義)를 가지고 싸웠는가에 있다. 한조각의 영토, 배상금 등에 구애되어 그것의 유무만을 가지고 성전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근세적 유물론의 편견을 폭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유사 이래의 일본의 전쟁은 전부가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적 유물론을 까마득히 넘어서는 천업익찬(天業翼贊)을 위한 일관된 성전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결코 서양 제국주의와 혼동될 수 없는 것이다

20) 『国体の本義』 文部省 1937. p.12

아니 오히려 그러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배제하려는 대의에 기반을 둔 성전인 것이다”²¹⁾

그리하여 까마득한 신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의 역합리화를 거듭하며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거듭하던 1940년, ‘기원 2600년’을 맞이하여 ‘봉축(奉祝)’, ‘천양무궁(天壤無窮)’, ‘만세(萬歲)’, ‘기미가요(君가代)’, ‘수사(壽詞)’, ‘성은(聖恩)’, ‘황모(皇謨)의 익찬(翼贊)’, ‘국체(國體)’, ‘동아의 안정과 해방’, ‘세계의 평화’, ‘천인침(千人針)’, ‘성전(聖戰)’, ‘황군(皇軍)’, ‘조국정신(肇國精神)’, ‘신주(神洲) 불멸(不滅)’, ‘가마카제(神風)’ 등 각양각색의 소위 언령(言靈)들이 난무, 일본 국민은 그야말로 열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전쟁 열기로 이어져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실현을 꿈꾸며 무한전쟁(無限戰爭)의 사투를 거듭한 결과 일본제국주의는 패망의 길을 걸었다. 이것이 일본인의 천황 숭배가 가져다 준 말로였던 것이다.

전후 일본의 천황제는 상징천황제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천황에게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소위 ‘인간선언’이었다. 소화천황의 이 ‘인간선언’은 외면적으로 ‘인격(人格)’을 가장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신격(神格)’의 연속성을 감추고 있었다. 천황의 내면적 ‘신격’은 전후에도 일본인의 잠재의식 속에 천황제의 연속성으로서의 소위 ‘국체(國體)’ 관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신격’을 부정하는 희대의 희극을 연출한 소화천황은 명치천황(明治天皇)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변모한 위상을 알리기 위해 지방 순행(巡行)을 행했다. 총사령부의 동의를 얻어 ‘전화(戰禍)에 시달린 국민을 위무(慰撫)’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진 소화천황의 순행은 1946년 2월부터 1954년 8월에 걸쳐 오키나와(沖繩)를 제외한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순행의 진정한 목적은 상징천황제에 대한 천황 숭배의 국민의식 형성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때의 소화천황은 이전의 ‘군복에 백마를 탄 대원수(大元帥)’의 모습이 아니라, 양복에 중절모라는 ‘서민적 풍모’로 변신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가볍게 말을 거는 자세와 ‘모자를 머리 위로 올리는 독특한 동작’으로 전국의 일본인들을 감동시켰고, 여전히 식지 않는 천황 숭배의 국민적 열기를 체험했던 것이다. 이때도 역시 일본의 천편일률주의(千篇一律主義) 마스크미 총동원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패전 직후 일본인이 벌이는 천황숭배의

21) 日本世紀社同人 ‘聖戰の本義’ 『文芸春秋』 1942. 1月号. p.89

집단주의 광기(狂氣) 속에서 한 미국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1946년 3월 26일 사이타마(埼玉)

그 때 나는 천황을(우리는 그를 Charlie라 불렀다) 자세히 볼 수가 있었다. 그는 작았으며 키가 157센티 정도일까. 이 날은 희색빛의 서투른 솜씨로 만든 양복을 입고 있었고, 바지는 6센티 정도가 짧았다. 얼굴은 가끔씩 확실하게 경련이 일었고, 쉴 새 없이 오른 쪽 어깨를 당기는 버릇이 있었다. 걸을 때는 오른 발을 조금 밖으로 내딛었는데, 그 발은 마치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분명히 흥분해서 평정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어디에서 왔나’라는 간단한 질문만 하기로 작정을 한 듯 이 환자 저 환자 똑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다. 환자가 대답하자, ‘앗 소우(아, 그래. あっそう)’하고 말했다”²²⁾

‘앗 소우’라는 유행어를 남긴 전후 일본 소화천황의 순행(巡幸)은 성공적이었고, 가는 곳마다 열광하는 민중들의 모습은, ‘지배자’인 맥아더의 점령 통치가 순행(順行) 중임을 과시하여 미국정부를 안심시켰고, 천황숭배의 연속성을 확인한 일본정부는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의 망각과 희석화를 더욱 가속시켜 나간다.

더구나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에서 미국에 의해 천황이 전범(戰犯)에서 제외됨으로써 일본인의 전쟁책임의식 부재와 망각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미국은 이른바 도쿄재판(東京裁判)을 천황을 기소 면제한 상태에서 주도적 ‘국가 원수’가 없는 국가주의자들의 ‘공동모의(共同謀議)’라는 각본에 의해 진행시켰다. 극동국제군사재판 도중 천황의 소극적인 전쟁책임 추궁의 방법으로 히로히토(裕仁)의 퇴위(退位)가 논의되었으나²³⁾, 이러한 시도도 천황 스스로에 의한 전쟁책임의 몰자각성과 미국의 이해관계 및 일본 국민의 천황에 대한 가치의존성에 의해 실현되지 않았다.

1852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은 미국이 설정한 전쟁범죄에 관한 규정(제11조)²⁴⁾을 수락했다. 이 규정에는 도쿄재판과 아시아 각지에서

22) 마크 게이(Mark Gayn), 井本威夫 역(訳) 『日本日記』 筑摩書房 1963. p.126

23) 소화천황의 퇴위 논의는 세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45년 패전 직후, 두 번째는 1948년 도쿄재판 판결 직전, 세 번째는 1951년 강화조약 조인 직전이다(井崎正敏 『天皇と日本人の課題』 洋泉社 2003. pp.131-133)

2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1조(전쟁범죄) : 일본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 및 일본 국내의 다른 연합국 전쟁범죄 법정(法廷)의 재판을 수락하며, 또한 일본국에 구금되어 있는 일본국민에게 이러한 법정에서 부과한 형을 집행한다. 이러한 이러한 구금자에 대한 사면, 감형, 가출옥의 권한은 각 사건에 대하여 형을 부과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정부 결정 및 일본국의

열렸던 군사재판에서의 판결을 일본 정부가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의 전쟁범죄자 처벌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이 되었고 또한 일본인의 전쟁범죄자 처벌은 종료된 것이 되었다. 일본의 국제사회 재등장은 일본인에게 일본인 스스로에 의한 전쟁책임의 추궁이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일본인의 전쟁책임의식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일본인의 전쟁책임에 대한 치매현상은 세계제2차대전에서 자신들이 오히려 원폭 피해자라는 가치전도현상을 확산시켰고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広島)와 나가사키(長崎)를 ‘평화의 성지(聖地)’로 선전하여 일본 국민이야말로 평화를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국민이라는 도착의식을 잠재의식화하기에 이른다.

천황숭배의 가치의존과 가치전도현상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주의를 상징하는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전후 일본인의 자세에서도 그 연속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연합군총사령부(GHQ)는 1945년 12월 신사지령(神社指令)을 내려 국가신도를 폐지했다. 또한 1946년 제정의 일본국헌법에서도 제20조와 제89조에 종교의 자유와 정교(政教)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 직후인 1952년 10월 소화천황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여 미군점령기간 동안 단절되었던 천황과 ‘야스쿠니신사’와의 관계가 부활되었다. 또한 ‘야스쿠니신사’의 분사(分社)인 각 지방의 호국신사(護国神社)에 대한 천황의 참배도 1957년 10월의 시즈오카현(静岡県) 호국신사에 대한 참배로부터 재개되었다.

1952년 10월 소화천황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즈음하여 천황을 본 유족(遺族)들이 ‘천황폐하의 참배가 언제 이루어질까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천황폐하 부처(夫妻)를 뵈게 되니 가슴에 맺힌 한이 풀렸다’²⁵⁾는 발언을 했을 때, ‘야스쿠니신사’는 천황과 일본인에 의해 또 다시 ‘성화(聖化)’되어 그 연속성을 확인받은 것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 분사(分社)에 해당하는 지방의 호국신사에 대한 천황의 참배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958년 10월의 이시카와현(石川県) 호국신사 참배 풍경은 다음과 같다.

권고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형을 선고한 사람에 대한 이권한은 재판소에 대표자를 보낸 정부의 과반수의 결정 및 일본국의 권고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日本国との平和条約(Treaty of Peace with Japan)』 1952年4月28日 内閣告示1 >

25) 『朝日新聞』 1952. 10. 16.

“천황은 참배전(參拜殿)을 오른쪽으로 돌아 하차(下車)하셨다. 길 양쪽으로는 가나자와시(金沢市)의 유족회원 2천 2백명이 가슴에 리본을 달고 뚝자리에 꿇어 앉아 천천히 지나가는 천황의 자동차에 만세를 외쳤다. 오오타(太田) 주지(住持)의 인도로 정문을 지나 앞으로 나아가는 천황폐하의 뒤를 따르던 황후 폐하도 천황폐하와 나란히 멈춰섰다. 그리고는 두 손을 무릎 근처까지 깊숙이 내리고 머리를 숙였다. 영령들이여, 평안이 있으라 명복을 비는 이 순간, 유족들도 깊이깊이 머리를 숙였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²⁶⁾

또한 1968년 9월 홋카이도(北海道) 호국신사 참배는 천황에 대한 일본인의 정신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천황의 참배에 즈음하여 신사에서는 참배전(參拜殿) 앞에 한평 정도의 넓이로 깨끗하게 정화(淨化)한 흰 모래를 깔았다. 그 위치에 서서 천황과 황후 두 폐하가 참배를 올렸다. 그런데 천황폐하와 황후폐하가 나가자마자, 도열해 있던 유족(遺族)들은 천황폐하와 황후폐하의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모래 위의 그 자리를 향해 너 나 할 것 없이 돌진해 갔다. 그리고는 손에 손에 그 모래를 가득 집어서 감격의 눈물로 젖어 있는 손수건 가득히 정성껏 싸서 가져갔다”²⁷⁾

전후 ‘야스쿠니신사’와 호국신사는 이미 폐지되었음에 틀림없는 국가신도의 중요 거점으로서 여전히 소위 ‘군신(軍神)’을 모신 채, 천황숭배의 페티시즘(fetishism)을 만연시키는 천황제의 추악한 상징물로 그 생명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소화천황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1975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또한 지방의 호국신사 참배는 1978년 5월 고치현(高知県) 호국신사 참배가 마지막이 되었다. 일체의 전쟁책임 문제를 천황에게 묻지 않으려는 일본인의 정형화된 배려로서, 천황이 정교 분리를 명시한 헌법 위반 혐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타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천황과 일본인 사이의 ‘상호 신뢰(인간선언)’를 확인한 후 슬며시 꼬리를 내린 소화천황의 ‘야스쿠니신사’와 호국신사 참배는 전후 일본인의 저 침략전쟁에 대한 시점(視點)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이다.

26) 『北国新聞』 1958. 10. 25.

27) 北海道護国神社 編 『北海道護国神社史』 1981. p.716 p.719

이러한 일본인의 천황숭배는 나아가서 1978년 10월 17일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에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이하 7명의 교수형 처형자와 마츠오카 요스케(松岡洋右) 외 미결병사자(未決病死者),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一郎) 외 5명의 옥사자(獄死者) 등 14명의 A급 전범을 ‘제신(祭神)’으로 합사(合祀)하는 역사의식의 망각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에 대해 ‘야스쿠니신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기관에서는 전범사형자(戰犯死刑者)란 용어를 쓰지 않고 전부 법무사망자(法務死亡者), 법무관계 유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1952년 4월 28일의 강화조약 발효 다음 해 제16국회의 의결에 의해 원호법이 개정되어 연합군측이 정한 A·B·C급 등의 구분에는 전혀 관계없이 법무관계 사망자, 본 신사의 호칭으로는 소화순난자(昭和殉難者)와 그 유족이 한결같이 전몰자와 전몰 유족과 똑 같은 처우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원호(援護)의 실시는 거슬러 올라가 1953년 4월 1일부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소위 A·B·C급 전범으로 사형당한 분들은 그 시점에서 법적으로 복권(復權)되었고, 이것을 반영하여 야스쿠니신사는 당연히 합사(合祀)하여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²⁸⁾

결국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는 천황에 대한 무한책임성으로 인해 무책임성의 가치의존을 현실화한 일본인을 대표하여 수상의 정치적 행위로 이양(移讓)되게 된다. ‘야스쿠니신사’의 춘추제례(春秋の例祭)에는 1951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의 참배 이래, 이시바시 탄잔(石橋塘山)을 제외하고 역대 수상이 참배했으며,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은 전후 총결산을 선언하며 공식참배를 감행했다. 이후 일본 수상의 공식참배 여부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유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이 국제적으로 인정한 ‘전쟁범죄’ 조항(제11조)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일본국헌법 제20조와 제89조의 조항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규정도 일본인의 전후 연속성의 천황숭배 사상까지 지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모(相撲)를 좋아하고 등이 둥글게 굽은 할아버지, 정치적인 생물로 볼 때 어휘 부족으로 몹시 더듬거리는 말 밖에 못하는 실로 불가사의였던 존재, 무릇 일국의 정치적 지도자로서 어울리는 풍모라곤 전혀 없었던’²⁹⁾ 히

28) ‘昭和殉難者靖国神社合祀の根拠’ 『靖国』(靖国神社 社報) 1986. 3. 1日号

로히토(裕仁), ‘신격’과 ‘인격’을 넘나드는 특이한 인생을 살았던 소화천황은 1989년 1월 7일 죽음을 맞이했다.

1989년 1월 7일 아키히토(明仁) 왕세자의 왕위 계승의 법적 근거는 황실 전범(皇室典範)이다. 일본국헌법에 의거하여 1947년 새로 제정된 황실전범에는 ‘황사(皇嗣, 황위 계승자)가 즉시 계승한다(제4조)’와 ‘황위의 계승 이후 즉위식을 행한다(제24조)’ 그리고 ‘대상례(大喪禮)를 행한다(제25조)’라는 규정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행해진 의식은 소화천황의 전례(前例)에 따라서 대일본제국헌법이 규정했던 구황실전범에 의거, 등극령(登極令)과 그 부속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다.

1989년 1월 7일 제125대 평성천황(平成天皇)의 천조(天祚),世子가 왕위를 계승함)와 함께 소위 ‘검새등승계례(劍璽等承繼禮, 천황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증거로 劍璽, 御璽, 国璽를 승계하는 의식)’이 있었고, 계속해서 1월 8일에는 정부에서 ‘평성(平成)’이라는 원호(元号)를 발표했다. 1월 9일에는 ‘즉위후 조견(朝見) 의식(천황이 즉위 후 공식적으로 삼부요인과 국민의 대표를 만나는 첫모임)’이 있었으며, 2월 24일의 ‘소화천황대상례’를 거쳐, 1990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즉위례(即位禮)’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11월 22일부터 ‘대상제(大嘗祭)³⁰⁾가 행해졌다.

이 중에서 소위 선왕(先王)으로부터 ‘삼종(三種)의 신기(神器)’³¹⁾를 계승한다는 ‘검새등승계례(劍璽等承繼禮)’와 원래는 신하(臣下)가 즉위한 천황을 궁중으로 찾아가 배알하던 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삼권(三權)의 장(長)이 참석하는 속임수로 대치한 ‘즉위후 조견(朝見) 의식’, 그리고 천황의 조상령(祖上靈)이 강림한다는 옥좌(高御座)에 앉아 ‘검새(劍璽)’를 들고 행하는 ‘즉위례(即位禮) 정전(正殿)의 의식’은 국가행사로 이루어져 정교분리(政教分離)와 국민주권을 명시한 헌법위반이라는 일부의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일련의 행사에서 세부에 있어서는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의

29) 安丸良夫 ‘近代天皇制の精神史的位相’, 歴史学研究会 編 『天皇と天皇制を考える』 青木書店 1986. p.48

30) 천황이 즉위한 후 대상궁(大嘗宮)의 유기전(悠紀殿)과 주기전(主基殿)에서 처음으로 햇곡식을 천황의 조상과 천지신(天地神祇)에게 바치고 자신도 음복(飲福)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오곡(五穀)의 풍요(豊饒)를 감사하고 기원한다는 의식을 말하며, 이때 천황의 조상신이 강림(降臨)한다고 한다. 이것과 관련된 일련의 행사를 총칭해서 쓰이기도 한다. 농경국가의 추수감사제(秋收感謝祭)라 할 수 있다.

31) 정통의 천황에게 계승되었다는 거울(八咫鏡), 검(草薙劍), 곡옥(八坂瓊曲玉)을 말한다. 『일본서기(日本書紀)』로부터 유래하며, 농경국가의 제사장의 상징물이라 볼 수 있다.

식(儀式)의 절차와 공간 배치에 의해 나타난 천황의 존재 근거는 ‘국민의 총의’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었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총의에 의한다’는 민주적인 절차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천황의 지위는 결국 옥좌(高御座)라는 공허한 자리에 천황이 앉음으로 인해 그의 몸에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 이하 황령(皇靈)이 깃든다, 그리하여 그가 천황이 된다는 구조였다. 즉 일련의 의식은 천황의 존재 근거가 ‘국민의 총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 이하 황령(皇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천황과 국민의 관계도 ‘조건의 의식’이 상징하듯이 군주와 신하의 관계이다. 평성천황은 즉위의 말에서 일본국헌법의 준수를 언급했지만 그의 말과 현실적인 의식에서의 행위가 모순되어 있어 사면팔방(四面八方)이 꼭 막히고 얽힌 주박(呪縛) 속에서 이중구속적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³²⁾

이 일련의 국가적 행사에서 일본 국민은 스스로 소화천황에 이어 평성천황(平成天皇)의 ‘신민(臣民)’임을 받아들였으며, 새로운 천황의 등장을 국민적 축제로 자기화했다. 또한 천황의 신성성을 천황제의 연속성으로 확인하여 천황숭배를 이어감에 따라 천황에 대한 가치의존과 헌신을 또 다시 일상화했던 것이다.

“성스러운 천황상의 연출의 예로 ‘조국(御国) 봉사단’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미야기현(宮城県)의 농촌청년 수십명이 황궁의 풀베기 봉사를 한 후 그 풀을 가지고 가서 퇴비로 사용하여 청정미(淸淨米)를 수확, 그것을 천황에게 헌상한 것을 계기로 하여 시작되었다. 이 봉사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오늘날에는 궁내청(宮内庁)에 신청하여 순번을 기다리는 시간이 만년에서 일년이 걸릴 정도로 성황이라고 한다. 이것은 농민층의 ‘재분배환상’이 황궁의 풀베기라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 넓은 의미의 생산력주의의 규범과 결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무슨 행사에서 천황이 심은 나무와 장소나 혹은 순행(巡幸)시에 숙박한 방이 신성시되는 예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일본의 근대 명치천황이 각지를 순행할 때 천황이 먹다 남긴 밥을 병으로 눈이 먼 노파가 먹었더니 눈이 떠져 시력을 되찾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신문에 실려 있다. 이러한 기적과 신화가 만들어져 그것이 성스러운 천황상을 만들어 갔던 것이다. 근대의 천황은 신흥 종교를 비롯해 각종 종교의 최대의 교조(敎祖), 대사제(大司祭)의 역할을 연출했던 것이다. 명치천황 이래의 성스

32) 栗原彬 ‘現代天皇制論’ 『天皇と王權を考ふる』岩波講座 第一卷. 岩波書店 2002. pp.131-132

러운 존재라는 관념이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표상되어 어떤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마다 상연되었던 것이다”³³⁾

이 천황주의에 대한 일본인의 자기화(自己化)는 천황의 정치적 혹은 법률적 규정에 구속됨이 없이 내면적 심성에 그 신성성에 대한 가치를 확대시켜 언제든지 현실적 능동성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1989년 8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의 ‘천황은 창공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므로 ‘국가는 천황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³⁴⁾는 발언, 2000년 5월 모리 요시로(森喜朗) 수상의 ‘일본이라는 나라는 진실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神)의 나라’³⁵⁾라는 발언 등 국가와 천황의 합일설도 일본인의 천황의 신성성에 대한 귀일사상(歸一思想)의 연속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일본인의 심성에 잠재의식화되어 있는 이 천황숭배 사상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현실화되었는지는 근대의 저 일본제국주의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천황제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나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광경이 떠오른다. 1968년 9월 22일 당시의 후생대신(厚生大臣) 소노다 스나오(園田直)가 미나마타병(水俣病, 1956년 熊本県 水俣市의 질소공장에서 방류된 메틸수은으로 인한 질병. 1969년 일본정부에 의해 공해병으로 인정됨 - 인용자)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처음으로 병문안 왔을 때의 일이다. 대신이 도착하자 무라노 다마노(村野タマノ)라는 환자가 흥분해서 경련을 일으켰는데, 그 때 그는 ‘기미가요(君が代)’를 ‘고에이카(御詠歌, 부처를 기리는 일본식 노래 - 인용자)처럼 부르고는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것이었다. ‘천황폐하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소노다 스나오가 지나가는 비디오 영상이 남아 있다. 그 무라노에게 천황은 대체 무엇이였을까. 결국 무라노는 천황을 일종의 구원자, 혹은 구세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현실의 천황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천황을 뛰어 넘는 천황이 드디어 사자를 보내서 자신을 구원해 주러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곳에서 튀어 나오는 ‘기미가요’ 혹은 ‘천황폐하 만세’라는 것이 실은 천황제 그 자체를 향해 무언가를 되돌려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천황제의 장치에 따라가면서도 천황제 자체를 안에서부터 폭파시켜 버리는 가능성이 거기에서 보이는 것이 아닐까”³⁶⁾.

33) 栗原彬 ‘日本民族宗教とそとの天皇制’ 『昭和の終焉』 岩波新書 岩波書店 1990. p.177-178

34) 『朝日新聞』 朝刊 1987. 8. 30

35) 『朝日新聞』 2000. 5. 16

36) 栗原彬 ‘現代天皇制論’ 『天皇と王権を考ふる』 岩波講座 第一巻. 岩波書店 2002. p.158

그러나 일본인의 '천황귀일(天皇歸一)'이 갖는 불가치성은 가치의 근원체가 천황이면 책임의 근원체도 천황이라고 하는 인과적 필연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패쇄회로의 순환이므로, 일단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천황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것은 물론, 개인 혹은 집단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일본인 특유의 무책임성과 기정사실의 맹목적 수용(受容)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천황을 정점으로 하여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일방적 억압구조는 상향적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내부에서의 파열을 피하기 위하여 외부적 돌파구를 필연적으로 찾는 현실 해결 방식을 형성한다. 내부 모순의 외부적 표출이라는 이 일본인의 현실 해결 방식은 그 돌파구를 항상 아시아로 향해 왔던 것이다.

소화천황의 죽음은 전후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천황제라는 사회질서의 근원에 위로만 향해 세워진 성스러운 존재로서의 천황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은 그 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민족과 국민이 동일 관념인 일본인의 정체성(identity)을 확인시켜 주는 천황이 역사성에 있어서 언제까지나 신성성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역사성에 있어 천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일본인은 천황의 인력(引力)에 의해 항상 외부에 대한 상대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5.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사상 - 획일성의 사이비 통합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의 일본의 과제는 근대국가의 수립이었다. 구체적으로 '부국강병(富国強兵)'과 '식산흥업(殖産興業)'을 추진하여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해 가면서 국가적 가치관이 개인의 가치관을 규정하는 하향적 가치질서를 고정시켰다. 국가는 제국주의로서의 초근대성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로서의 국민의식은 전근대성의 봉건유제를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질서의 정점에 천황이 군림하고 있었다.

이것은 개인과 국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가족주의 천황제 하에서 '신민(臣民)'의 무한책임과도 맞물리면서 천황과 연결되는 모든 것에 대한 불가치적 충성, 다시 말해서 타자에의 가치의존이 만연하여 사고방식의 융

통성의 박탈과 교조화, 즉 사상의 경직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가치의존에 있어서는 의존대상이 배후에 버티고 있을 때는 더할 수 없이 강한 집단주의로서의 자기주장과 자기표현이 가능하지만, 일단 가치의존의 대상을 상실했을 때에는 철저한 자기무화(自己無化)가 필연이어서 의지할 곳 없는 가련한 미아(迷兒)로 전락해 버릴 수 밖에 없다. 일본제국주의에 있어서 일본인이 전민족적 차원으로 보여준 치매적 애국심과 천황에의 유아적(幼兒的) 귀의는 물론, 수많은 지식인의 권력에의 무력한 편승과 굴복, 지식인의 전향(轉向)에서 보여준 손쉬운 이념의 포기과 권력에의 철저한 복종, 혹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보여준 천황을 비롯한 군국주의 지배자의 비굴하기 짝이 없는 응졸함과 왜소성, 책임 부정의 태도 등은 이것을 여지없이 전세계에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의 이러한 편향적 가치관은 천황제 국가가 마련해 준 일면적인 안정적 구도 속에서 순진한 모범생의식을 일반화시켰다. 이것은 천황에 대한 일본 '신민'의 무한책임이 일반화되어 있던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그 발현형태에 있어서는 가치의존의 대상에 대한 맹목적 충성 혹은 몰입의 과시로 나타난다. 모범생의식은 자기결정 혹은 자기필연성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치의존 대상에 대한 모범답안의 작성을 강박당하게 된다. 가치결정을 항상 타자가 하기 때문에 자기융통성 혹은 자기창조성이 결여된 채 타자의 논리의 정당화 혹은 합리화 및 구체화에 종사하는 것이다. 모범생의식은 당연한 결과로 가치의 동결화의 길을 걷는다. 대상이 무엇이든 일면적 성실성의 자기몰입을 보일 뿐인 것이다. 여기에 일본인의 치매적 순진성과 성실성이 숨어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열심히 한다는 심정적 자기성실성에 가로막혀 자기악의 발견, 자기모순의 자각이 거세된 채 가치결정주체에 대한 일관된 투신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일본들이 보여준 소위 '국체(国体)'에의 현란한 논리적 봉사와 맹목적 복종은 근대 일본인의 모범생의식을 여지없이 보여준 절호의 예인 것이다.

전후의 일본인의 천황숭배는 이러한 근대 일본의 정신적 풍토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전통적으로 공적(公的) 가치 혹은 국가적 가치가 사적(私的) 가치에 우선하는 일본사회에서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하기보다는 집단의 의사결정에 순종하는 획일주의에 익숙했던 것이다. 천황에 대한 국민적 자기화와 가치의존성은 소화천황의 와병을 계기로 1988년 9월부터 집단주의로 시작된 소위 '자숙(自肅)'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1988년 9월 22일 일반인의 기장(記帳)이 시작되자마자 각 매스컴은 판에 박은 듯이 똑 같은 천황의 ‘용태(容態) 뉴스’를 내보냈고, 그것이 끝나면 황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설치된 기장소(記帳所)에 밀려드는 인파를 끝없이 비쳐 주는가 하면 황궁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본 국민의 극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로 영상화되자 그것이 마치 ‘일반적이고 보통의 행위’인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이 차례차례 기장을 위해 몰려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각 신문도 똑 같은 보도를 계속하자 도쿄(東京)의 한 대학생처럼 ‘기장은 일종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 어쨌든 참가하고 보자’(『読売新聞』1988. 10. 14)는 식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효과를 거두어, 매스컴의 ‘총(總)저널리즘 상황’에 의해 눈사태현상이 일어나 ‘기장 붐’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러한 ‘총저널리즘 상황’은 나아가 ‘일억 총자숙(総自肅)’ 현상으로 발전했다. 텔레비전 방송국은 스스로 광고의 내용을 바꾸고,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코미디 프로그램을 ‘자숙’했다.

정부가 각료의 출장을 중지시킨 것이 일반인에게도 과급되어 축제를 비롯해 축하회, 퍼레이드, 파티, 나아가 운동회까지도 중지하는 사태로 번져 일본열도는 그야말로 ‘자숙’ 분위기에 휩싸였던 것이다”³⁷⁾

전통적으로 사적(私的) 개념보다는 공적(公的) 개념이 우선하는 일본인에게는 ‘관(官)’이나 ‘상부(上部)’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심성이 일반화되어 있다. 일반사회 내부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확대하고 토론하여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집단내에서 스스로 질서를 형성하여 간다는 사고방식은 거세되고, 가치의존의 대상인 ‘관(官)’이나 ‘상부’로부터의 명령이나 지시 혹은 판단과 암시 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따르는 의식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항상 자발적 복종의 형태를 취해 개인 혹은 일반사회를 구속한다.

“소화천황이 매장되는 무사시능(武蔵陵) 묘지가 있는 하치오지시(八王子市)에서는 ‘소화천황을 맞이하는 시민회’를 만들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급조된 조직으로 향불 대금으로 1인당 1만엔의 기부를 로타리클럽과 라이온스클럽에 요청했다. 이 시민회의의 주도자는 보수 중도계의 의원과 상공회의소장 등 시의 보수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주도자가 지방의 유지들이

37) 青木貞伸 ‘黒樫のブラウン管’ 『昭和の終焉』 岩波新書 岩波書店 1990. p.160)

있으므로 기부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부하면 동료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흘렀다고 한다. 기부금 모집은 일종의 충성맹서와도 같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쟁체험이 있는 중년과 고년층 중에 반발과 반대도 강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관방장관(官房長官)이 이 시민회를 방문하여 인사하는 자리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회를 발족시켰다 하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몇 번이고 ‘자발적’이라는 말을 반복했다”³⁸⁾

천황에의 자발적 가치의존은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과 예찬으로 이어져 국가적 가치화 곧 ‘국체(國體)’의 자기화가 이루어진다.

“은혜와 자혜(慈惠)의 원천이라는 천황상이 있다. 나는 이것을 ‘재분배환상(再分配幻想)’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를 들면 ‘전후 일본의 변영은 천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인식 즉 천황이 있었으므로 전후의 혼란기에도 여러 세력들이 난립하지 않았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날 평화스러운 일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천황의 덕분이다라는 인식인 것이다. 또한 천황에 대해 언급할 때는 일본인과 일본을 천황에 수렴시킨다는 것. ‘천황은 일본의 주체’, ‘천황은 일본의 주인’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더욱 더 인상적인 것은 기장(記帳)하는 풍경을 가리키면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일본은 정말 좋은 나라구나 하고 생각해요’는 말을 한 사람은 상가에서 가족경영의 상점을 운영하는 61세의 할머니였다. 계속해서 그녀는 ‘천황제는 좋은 것이니까 즉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천황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단결할 수 있는 거예요’는 말도 덧붙였다. ‘일본은 좋은 나라’라는 인식은 기장하는 풍경을 일본인 전체 혹은 일본 전체로 확대하는 비약논리인 것이다”³⁹⁾

일본은 아시아에서 민족주의에 실패한 유일한 나라다. 이것은 근대 일본이 생래의 제국주의로 출발하여 초국가주의(ultra-nationalism)를 비대화시킨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개인 가족 사회 국가의 상승적 대타의식의 성장으로서의 인격형성이 아니라 국가 사회 가족 개인의 하강식 인격형성이 보편화되었던 것이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의지 혹은 가치결정의 주체는 하강식 가치강요에 의하여 사회적 혹은 국가적 상위 주체로서의 타자가 된다. 이러한 정신적 기저 속에서는 개인의 자기결정 혹은 자기필연성

38) 栗原彬 ‘日本民族宗教とそとの天皇制 『昭和の終焉』 岩波新書 岩波書店 1990. pp.185-186

39) 栗原彬 ‘現代天皇制論’ 『天皇と王權を考ふる』 岩波講座 第一巻. 岩波書店 2002. pp.133-134

으로서의 자유의식이 사회의식으로 고양되는 계기가 현저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천황이 모든 것의 정점으로 자리한 절대주의 천황제 아래 공적 개념 우선의 전통이 토착화되어 있는 봉건유제 속에서 개인의 자유의지가 박탈되었을 때 사유주체로서의 개인은 당연히 상위 주체에의 상승적 가치 의존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사고의 획일화를 유발하여 도처에서 집단히스테리로서의 의사결단(擬似決斷)을 횡행시킨다.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일종의 터부(taboo)로 자리잡아 음험하게 사회구성원의 의식구조를 고정시키고 구속한다. 후진사회일수록 터부가 만연한다. 아직도 여전히 일본사회에 맹위를 떨치고 있는 천황에 대한 터부는 이러한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는 미국에 의해 주어진 민주주의였다. 천황에 대한 일본인의 위상을 재정립할 결정적인 기회였던 천황의 소위 ‘인간선언’과 ‘평화헌법’이 사실은 미국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전후 민주주의의 추진과정에서 일본인은 항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소위 ‘평화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국민(國民)’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로지 소위 ‘국체(國體)’의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미국이 요구하는 천황제와 타협했다. 이른바 연합국을 대표한 미국이 주도하는 총사령부와 대일본제국헌법에 따라 구성된 일본정부와의 합작품으로서의 상징천황제를 수용하여 천황숭배의 연속성에 복종했고 그것을 당연시했으며 또 그것을 자기화했던 것이다.

‘오래 된 것은 통한다’는 사이비 전통사회 일본 ‘다 같이 하면 무섭지 않다’는 일본인의 집단주의, 일본인의 이 맹목적 가치복종으로서의 상명하복의 사상은 천황숭배와 연결되어 천황제에 대한 주체적 자기 결정을 포기한 채 일본국헌법의 소위 ‘국민의 총의(總意)’를 거부하는 모순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6. 상징성의 사상 - 정신적 국가원수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 소위 평화헌법은 천황을 ‘일본국의 상징이며, 주권을 가지는 국민의 총의(總意)에 의한 국민통합의 상징(象徴)(제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천황의 국사행위(國事行為)로서 내각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장에 대한 임명권(제6조) 이외에도 제7조에 10개 항목을 정해 놓고

있다.

이 ‘상징(象徴)’이 갖는 의미는 일본 정부에 의하면, ‘일본 국민은 유형(有形)의 구체적인 천황의 모습을 통하여 그 속에서 일본국이라는 무형(無形)의 추상적인 존재 혹은 국민통합이라는 무형의 추상적인 내용(内容)을 떠올린다. 또한 천황을 통하여 일본국으로서의 통일성을 느낀다’⁴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상징’의 의미가 전후 일본의 국회에서 구체적 정의(定義)를 둘러싸고 애매모호한 답변과 말꼬리 잡기 등의 언어의 유희를 반복하여 천황제 자체의 추상성과 다의성(多義性) 만큼이나 진부한 논의로 전락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상징이란 추상적·무형적·비감각적인 것을 구체적·유형적·감각적인 것에 의하여 구상화하는 작용 내지는 매개물을 뜻한다. 국가에 있어서 상징(symbol)이란, 일치되지 않는 국가의 여러 기능들을 어떤 장소 혹은 어느 시점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집중하여 통일시키는 작용을 하는 유형·무형의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기능은 일반적으로 국기(国旗), 국가(国歌), 국화(国花)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구체적 실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표상하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상징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국기(国旗)의 실체 혹은 국가(国歌) 및 국화(国花)의 실체란 다른 유사한 깃발·노래·꽃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징이란 말 자체의 추상성과 마찬가지로 상징하는 대상 자체가 추상적인 의미에 있어서 상징의 실체를 발현할 수가 있다. 상징하는 것 자체가 추상성이기 때문에 상징은 상징 자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기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상징이란 항상 표상하는 주체가 능동적으로 상징을 내세워 상징의 대상을 주장할 때만이 상징의 의미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천황이 국가의 상징이라 규정할 경우에는 천황 스스로의 의사표현에 의한 상징의 의미전달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일본 국민이 천황을 내세워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천황의 상징성이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천황 스스로의 능동적인 상징의 전달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살아 있는 인간이 추상적인 상징물이 될 때 이러한 상징의 의미는 결국 일본 국민에 의해 천황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어떤 것이 될 것이다. 헌법의 규정에 의해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천황의 정치적인 권력이 박탈되고 다만 상징적인 표상물이 되

40)大原康男 編著 『詳録・皇室をめぐる国会 論議』 展転社 1997. p.23

어 헌법이 규정한 바의 이른 바 국사행위만을 행하는 천황이 상징하는 실체는 결국 명치유신 이전의 천황의 권위로 환원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영국의 ‘군림하나 통치하는 않는다’ 입헌군주제와 흡사하다 할 수 있다(영국의 경우 상징의 대상을 인격체인 왕<King>으로 하지 않고 사물인 왕관<Crown>으로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국민에게 있어서 명치유신 이래 천황 주권에 입각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살아 있는 신(現人神)’으로까지 승격되었던 천황의 존재가 제국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헌법상 근대의 절대주의 천황제와 단절되었다 해도, 국민의식이 천황제 자체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심리적으로 천황에 대한 신성성의 권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일본사회에서는 천황제의 연속성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정치적·사회적인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는 일본사회에서 헌법상 절대주의 천황제와의 단절을 명문화하고 국민주권의 시민민주주의를 구현했다 해도, 일본 민족 특유의 맹목적 전통고수주의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제 신화가 잠재의식화되어 있는 일본 국민에게는 천황제 유지야말로 단절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연속성의 구속이 더욱 고착되어 있는 것이다.

법률적 규정과 행동양식의 규범화(국사행위)에 의해 천황의 존재를 ‘상징’의 대상으로 수동화시켜도 일본 국민의 천황에 대한 정신적 관련양상이 항상 수동적·신화적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천황 자신의 능동성을 유발시키고 있는 한, 천황은 언제든지 상징의 허울을 벗고 능동적 권력 주체로서 재등장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 스스로가 언제든지 천황의 이름으로 잠재의식화된 정신적 편향성의 실체를 드러낼 수가 있을 것이다.

상징천황제의 의제(擬制), 과연 일본인은 ‘주권을 가지는 국민’으로서 그들의 ‘총의(總意)’를 모아 천황제에 대한 ‘자유와의 계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일본인에게 ‘상징’으로서의 천황과 ‘주권을 가지는 국민의 총의’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애매모호성이 연속되는 시대적 흐름의 이면에서 1988년 소화(昭和)천황의 병상을 둘러싸고 전국민적인 규모로 눈사태처럼 번져갔던 ‘자숙(自肅)’이라는 이름의 비공식적 공식행위들은 일본인의 내면에서 천황제 주술(呪術)의 속박이 어떻게 ‘국민의 총의’를 모아가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

인 예라 할 것이다.

결국 상징천황제하의 천황은 일본인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시간의 지배방식으로(元号), 공사(公私) 혼합의 종교적 방식으로(神社), 국민통합의 상징적 방법으로(君が代, 日の丸), 국가기관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부여방식으로(国事行為), 국가원수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7. 맺음말 - 천황제의 미래

일본제국주의 패망은 일본인에게 ‘국민의 총의(總意)’로서 천황과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일본인은 이 기회를 천황제의 연속성으로 처리하여 절대주의 천황제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했다. 21세기의 현재에 있어서도 천황과 일본인 사이에 고착된 가족주의와 신성성, 상명하복의 획일성 그리고 상징성으로 포장된 지배자로서의 천황상이 여전히 일본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인이 천황제의 주술적 속박으로부터 주체적 의사결정을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 길은 아직도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더구나 천황제와 맞물려 일본의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이라는 무거운 역사의 원죄는 여전히 일본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시금석(試金石)으로서 이웃나라의 주시(注視)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장벽인 것이다. 천황제의 향방이 세계에 대한 일본의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미 퇴색한 연합국의 ‘일본 국민의 자유 의사’는 아직도 그 시효를 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천황제, 그것은 일본인의 ‘자유 의사’의 영역에 아직도 남겨져 있다.

“천황제를 비판하든지 아니면 비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 오랜 동안의 일본 지식인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여러모로 바뀌어 가는 이유로는 ‘보수늙은이’들의 역습이 시작되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천황제를 비판할 필연성도 필요도 없다는 점 바로 그것이 원인이다. 그것은 천황제를 지지하는 근거도 동시에 상실되었다는 것과 표리관계에 있다. 반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것, 왕세자 일가의 영상을 보면 흐뭇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렇게 연출된 영상에 일부러 애써서 거역할 동기가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그러한 행동이 현대의 풍속으로서의 천황제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⁴¹⁾

그러나 역사가 던져주는 교훈에는 저 근대에 아시아가 잠자던 시절, 일본인은 제국주의에 도취되어 ‘아시아의 해방’을 외치기 이전에 ‘천황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쳤어야 했다는 몽매성(蒙昧性)에의 경고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아시아는 일본이 동경(憧憬)의 나라, 배울 것이 무궁무진한 나라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전후 사이비(似而非) 민주주의 속에서 일본이 전가(伝家)의 보도(宝刀)처럼 선전하고 있는 일본의 멋들어진 전후부흥과 경제발전이 아시아의 희생과 고통으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진실을 이제는 일본에게 되돌려 줄 역사로부터의 해방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인에 의한 내부적 인과(因果)와 아시아에 의한 외부적 보편성이 필연성으로 만나는 그 길에 일본 천황제의 미래가 있다.

【参考文献】

- 大日本帝国学士院 編纂 『皇室制度史』第一卷 大日本帝国学士院 1937. p.126
 文部省 編 『国体の本義』文部省 1937. p.9、p.12
 井崎正敏 『天皇と日本人の課題』洋泉社 2003. p.12、p.50~51、p.131~133
 鈴木正幸 『皇室制度』岩波新書 岩波書店 2005. p.19~20、p.76
 芦部信喜 『憲法』岩波書店 1993. p.24
 高橋紘 編 『昭和天皇発言録』小学館 1989. p.240~241
 岩波新書編集部 編 『昭和の終焉』岩波新書1990. p.160、p.177~178、p.179、
 p.185~186
 網野善彦外編 『天皇と王権を考える』岩波講座 第一卷. 岩波書店 2002. p.131~132、
 p.133、p.133~134、p.158
 北海道護国神社 編 『北海道護国神社史』1981. p.716、p.719
 歴史学研究会 編 『天皇と天皇制を考える』青木書店 1986. p.48
 大原康男 編著 『詳録・皇室をめぐる国会論議』展転社 1997. p.23
 原武史 『皇居前広場』光文社新書 光文社 2003.
 石田圭介 『近代知識人の天皇論』日本教文社 1987.
 高沢秀次 『戦後日本の論点』ちくま新書 筑摩書店 2003.

41)井崎正敏 『天皇と日本人の課題』洋泉社 2003. p.12

- 歴史学研究会 編 『天皇と天皇制を考える』 青木書店 1986.
『いま天皇制を考える』 青木書店 1989.
- 中村政則 『象徴天皇制への道』 岩波新書 岩波書店 1989.
- 資料日本占領 1 『天皇制』 大月書店 1990.
- 日本現代史研究会 編 『象徴天皇制とは何か』 大月書店 1988.
- 岩間一雄 『天皇制の政治思想史』 未来社 1998.
- 天野恵一 『日の丸・君が代じかけの天皇制』 インパクト出版会 2001.
- 後藤靖 『天皇制と民衆』 東京大学出版会 1985.
- 近代日本思想研究会 『天皇論を読む』 講談社現代新書 講談社 2003.
- 加藤典洋 『敗戦後論』 講談社 1997 : 서은혜 옮김 『사죄와 망언 사이에서』 창비사 1998. p.280
- マーク ゲイン(Mark Gayn), 井本威夫 訳 『日本日記』 筑摩書房 1963. p.126
- ヶネス ルオフ(Kenneth Ruoff), 木村剛久 外 訳 『国民の天皇』 共同通信社 2003.
- 『世界大百科事典』 23 学園出版社 1994. p.6
- 『朝光』 (朝鮮)1942. 9月号. p.27~29
- 『文芸春秋』 1942. 1月号. p.89、 p.96~97
- 『朝日新聞』 1945.8.28, 1945.8.30, 1946.1.1, 1952.10.16, 1987.8.30, 2005.5.16
- 『北国新聞』 1958.10.25
- 『東京日日新聞』 1876.7.5
- 『靖国』 (靖国神社 社報) 1986.3.1日号

要 旨

太平洋戦争に於いて日本帝国主義の敗北は、日本人にとって日本国憲法の言う ' 日本国民の総意 ' として天皇との位相を再定立する絶好のチャンスであった。しかし、日本人はアメリカの占領統治の政治的判断によって天皇の戦犯としての起訴が免除された事と天皇の政治的権力を剥奪して象徴的存在に位置づけた事をきっかけに、このチャンスを天皇制の連続性を温存させる形で処理し、かの近代に於ける絶対主義天皇制の遺産を清算する事が出来なかった。

21世紀の現在に於いても、天皇にまつわる家族主義と神聖性、上命下服の思想、精神的国家元首を隠す象徴性の思想など、支配者としての天皇像が依然として日本社会に蔓延している。そして、日本人が天皇制の与えている呪術的束縛から脱出して主体的意思決定を決断できる自由の道はまだ遙遠な課題なのである。

その上、天皇制と絡み合っただ日本の戦争責任と戦後責任という重い歴史の原罪は、依然として日本人に与えられた試金石として、アジアの隣国の注視の目をそらす事の出来ないもう一つの障壁である。天皇制の行方が世界に対する日本の選択になるしかない理由の所以がここにある。したがって、日本人にはすでに退色してしまったはずの連合国のいう ' 日本国民の自由意思 ' は、いまだにその時効を終えることはあり得ないのである。天皇制、それは日本人の ' 自由意思 ' の領域に今なお残っている歴史の負債である。

キーワード：現代天皇制、近代天皇制、象徴天皇制、国体、連続性、国民統合

투 고 : 2006. 8. 31

1차 심사 : 2006. 9. 9

2차 심사 : 2006. 9. 30

住 所 : (136-714) 서울시 성북구 월곡동 동덕여자대학교 일본어과

電 話 : 010-8636-9872, 02-940-4371

e-mail : chung51@dongduk.ac.kr